의 안 번 호

1784

【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

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1. 6. 25.(금)

O 제 출 자 : 중구청장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

O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13.(화)

2. 제안이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」에 지역자 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O 조례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지역자율방재단 역할, 구성 사항 규정(안 제2조 ~ 제3조)
- 단장의 임기, 임무, 해임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역할, 협의회 구성 사항 규정(안 제7조 ~ 제8조)
- O 회원의 임기, 회장의 임무, 협의회 운영 규정(안 제9조 ~ 제11조)
- 소집 규정(안 제12조)
- O 운영, 출입증 발급 규정(안 제13조 ~ 제14조)
- O 교육 및 훈련 규정(안 제15조)
- 중앙지원단 자문, 감독, 포상 규정(안 제16조 ~ 제18조)
- 재해보상금 청구, 유족의 우선순위 규정(안 제19조 ~ 제20조)
-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규정(안 제21조)
- 재해보상금 환수 규정(안 제22조)

4. 근거법규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6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60조 ~ 제65조

5. 검토의견

-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현행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 · 복구에 관한 조례」 내에 조문으로 규정되 어 있어 업무추진 시 본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현실 체계 에 맞게 구체적 조문으로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임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의 개정(2020.6.16.)으로 시행령 제61조 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.대비.대응.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,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 이를 근거로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 조항과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임무 중 질병, 부상 또는 사망 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 하였음
- O 상위법 및 관련 규정 검토한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.